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23 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 강선영 • 이인선 • 박준태

고동진 · 최수진 · 성일종

유용원 · 김상훈 · 구자근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·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입영·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.

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 검,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·지문·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(이하 "생체정보"라 함)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도록하고,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7조의7 신설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7조의7(생체정보를 활용한 병역의무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)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 및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얼굴·지문 및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(이하 "생체정보"라 한다)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 - 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입영판정검사,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
 - 2. 입영 대상자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
 -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수집·이용하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 며,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.
 -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7조의7(생체정보를 활용한 병
	역의무자 본인 일치 여부 확
	인)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
	무청장(병무지청장 및 신체등
	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
	청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
	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목적에 한정하여 얼굴ㆍ지문
	및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
	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
	정보(이하 "생체정보"라 한다)
	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.
	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
	사, 입영판정검사, 신체검사
	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
	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
	2. 입영 대상자에 대한 본인 일
	치 여부 확인
	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
	<u>수집ㆍ이용하려는 경우 병무청</u>
	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관계
	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

- <u>요청할</u> 수 있으며,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생체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 제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 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 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 장은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 야 한다.